

법무부

① 치료감호제도(치료처우과)

- (개념)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, 약물 등 중독자, 정신성적 장애자 중 재범위험성 있고 특수한 교육·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와 치료를 하는 보안처분
- (관련규정)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(치료감호 대상)

- 1호 : 심신장애자(15년)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
- 2호 : 마약류·알코올 등 중독자(2년)
- 3호 : 정신성적 장애자(15년)로 소아성기호증,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자

② 약물중독재활센터(치료처우과)

- (개요) 약물중독 피치료감호자를 수용하여 심층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교육을 위해 '04.1.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관
- (약물중독재활센터 조직) 2과(교육관리과, 중독진료과)로 의사 2명, 간호사·간호조무사 22명, 심리사, 사회복지사 등 35명으로 구성
- (주요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)

단주·단약 교육	인성교육	직업재활 교육
매트릭스-K	서예	컴퓨터 정보화 교육
행복 48단계	단학	제과제빵 교육
긍정심리치료	미술치료	검정고시 준비반
12단계 촉진치료	인문학 강의	한자능력검정 준비반

③ 보호관찰 제도(보호관찰과)

- (개요) 범죄인을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·감독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,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제도
- (적용대상)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 중,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

(1) 근거법령	(2) 대 상	(3) 기 간
「형 법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(제59조의2) 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(제62조의2) ■ 성인 가석방자(제73조의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년 ■ 유예기간(1~5년) ■ 잔형 기간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舊「사회보호법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종료자·치료감호기간만료 등(제32조) ■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(제44조의2제3항) ■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자(제44조의2제3항) ■ 가출소자 등(제10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년 ■ 1년 ■ 유예기간(1~5년) ■ 3년
「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급 6월

- (주요내용)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와 치료 지원으로 마약 투약 욕구 억제
 - 불시 소변 및 모발 약물검사를 통해 보호관찰 기간 중, 마약 재투약 여부를 확인
 - 정신적, 신체적 문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단약 상담 및 병원 연계 등 치료적 개입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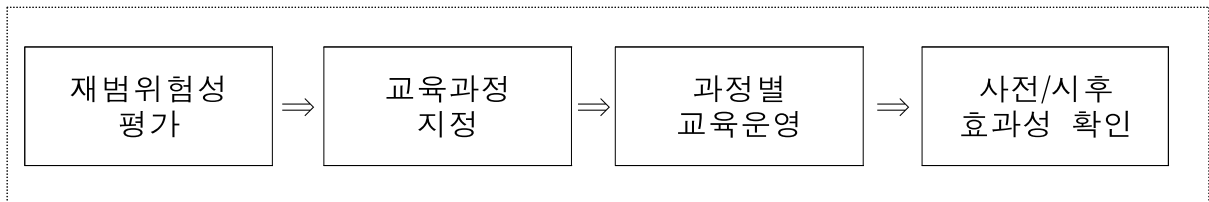
4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교육 실시(심리치료과)

- (개요) 마약류사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
- (관련근거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(시행 ' 20.12.4.~)

제40조의 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

- *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도입
- * 교정기관장은 이수명령이 병과된 투약사범에 대해 200시간 이하의 이수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 발생

- (교육절차)



보건복지부

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제도

- (개요)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-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), 「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」(대통령령) 제19조(비용부담)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,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.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(비용부담) 국가는 시·도지사에게 대하여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- (지원절차) 검찰 의뢰(치료조건부 기소유예)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(자의)에 의해 치료보호 지원절차 진행
 - 마약류 중독자 →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여부 판단.치료보호기관 의뢰(검찰) 또는 본인이나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→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(치료보호기관) → 중앙 또는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,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→ 입원 및 외래치료 →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→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
 - * 국립병원 지원대상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(복지부 운영) 심사, 민간의료기관 지원대상은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(시도 운영) 심사를 받음

○ 치료보호기관 현황('20년 12월 말 기준)

지역 \ 구분	병원명	대표번호
서울	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	02-300-8114
	국립정신건강센터	02-2204-0114
부산	부산광역시의료원	051-507-3000
대구	대구의료원	053-560-7575
인천	인천광역시의료원	032-580-6000
	인천참사랑병원	032-571-9111
광주	광주시립정신병원	062-949-5201
대전	참다남병원	042-222-0122
울산	마더스 병원	052-272-2505
경기	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	031-828-5000
	용인정신병원	031-288-0114
	계요병원	031-455-3333
강원	국립춘천병원	033-260-3000
충북	청주의료원	043-2790-114
충남	국립공주병원	041-850-5700
전북	원광대학교병원	1577-3773
전남	국립나주병원	061-330-4114
경북	포항의료원	054-247-0551
경남	국립부곡병원	055-536-6440
	양산병원	055-389-1234
제주	연강병원	064-726-7900

식약처·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
①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

- (개요)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 선별하여 적절하게 개입 및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
-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(시행' 02.12.~)

* (마약퇴치운동본부)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수행

- (서비스 체계)



- (주요 제공 서비스)

- 중독재활센터에 등록된 사람에게 개별상담과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, 그 가족에게는 가족프로그램을 제공
 - 접수-사정평가-ISP(개별서비스 계획) 수립-개입-재발예방-모니터링-평가
 - ISP(개별서비스 계획): 등록자인 약물사용자 및 가족과 함께 수립
- 개별상담(심리상담 서비스)
 - 심리검사(6종) MMPI-2, TCI, SCT, K-IIP, HTP, KFD¹⁾ 실시 → 대면 심리상담
 - 심리상담 10회 제공(주1회, 30~50분), 필요한 경우 최대 20회
- 집단상담
 - (서비스 형태) 집단으로 2회기~6회기 집단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
 - 단약동기증진집단프로그램(4회기, 매주 화, 목요일), 12단계프로그램(6회기, 매주 수)

1) MMPI-2(다면적 인성검사), TCI(기질 및 성격검사), SCT(문장완성검사), K-IIP(대인관계문제검사), HTP(미술심리검사), KFD(동적가족화검사)

- 가족프로그램

- (서비스 형태) 매주 가족교육(월2회)과 가족집단(자조모임) 상설 운영
- 가족교육 : 가족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내용 선정하여 진행(회당, 2시간)
- (내용) 가족이 알아야할 약물 및 대처 방법, 중독자가족의 연대감과 자조모임을 통한 회복, 가족지침서 ‘하루하루에 살자’ 학습 및 실천, 가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내용 등

② [교육조건/선도위탁] 기소유예 재활교육프로그램

- (개요)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
-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(시행 ' 02.12.~) 및 「치료보호·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리지침」(대검찰청) 「마약류사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선도업무처리지침」(법무부) (시행 ' 19.1.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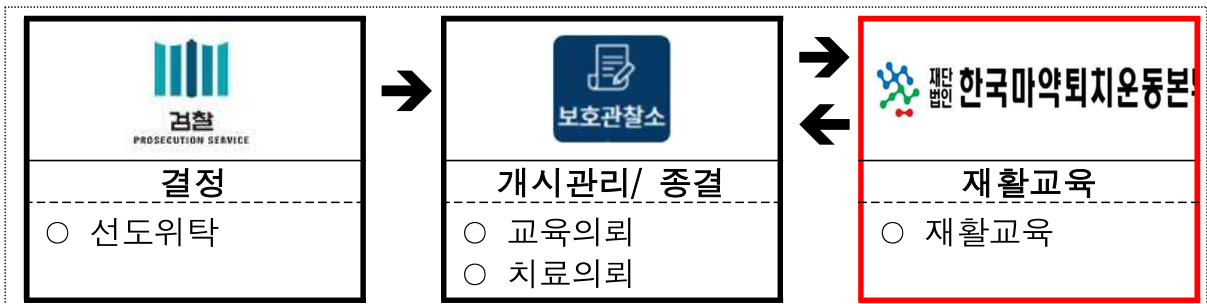
*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수행
 *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의 재활교육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뢰

○ (관리체계)

- 교육조건 마약류 사범 관리 체계



- 선도조건 마약류 사범 관리 체계



○ (주요 사업내용)

- 교육조건 기소유예 재활교육

- (대상) 초범 등 비교적 경하다고 판단되는 마약류사범
- (기간) 6개월
- (교육기관)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- (재활교육) 집단상담 형태의 단약동기 증진프로그램으로서 전문 강좌로 구성(28시간)

- 선도조건 기소유예 재활교육

- (대상) 교육조건부보다 무거우나 기소된 자보다는 가볍다고 판단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사범
- (기간) 6개월 선도유예
- (내용) 보호관찰과 교육 또는 치료 병과
 - * (교육기관)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 - ** (치료기관) 전국 치료명령 치료기관 243개소(2개월)
- (재활교육) : 교육조건 기소유예 대상 재활교육프로그램과 동일